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4나55886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4나5588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가단506085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장근석

피고, 항소인1.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가영현

피고, 항소심당사자2.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천

변론 종결2025. 3. 28.

판결 선고2025. 4. 11.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가단5060851 판결

주문

1.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96,498,119원과 그중 88,000,000원에 대하여 2024. 2.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73%,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B 주식회사는 99,923,682원과 그중 88,000,000원에 대하여 2024. 2.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8.73%,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1).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의 "지연배상금율은"을 "지연배상금률은"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 13행의 "피고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를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을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의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을 "이 사건 전세대출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의 "C의 전세대출과"를 "이 사건 전세대출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6행의 "피고 공사는"을 "이에 대하여 피고 공사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한편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는 2020. 6. 17. 이 사건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부동산 임대차 권리상의 하자로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를 피고 B 주식회사가 보전해 주는 내용의 부동산권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의 "이 사건은 목적물이"를 "이 사건 목적물이"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2, 21행의 각 "보증약관"을 "이 사건 약관"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 4행의 "2018. 5. 10.경"을 "2018. 5. 8.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행의 "이 사건 대출금을"을 "이 사건 전세대출금을"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 공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정인재

판사김기현

판사신영희

1)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만 항소하였다.

원고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주관적·예비적 병합 관계에 있고, 한쪽 청구에 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과정이 상호 결합하여 모든 당사자 사이에 결론의 합일확정이 필요하므로,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만 항소하였으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도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